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가단1150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김준동, 홍성필, 김말금, 최단비, 이선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9분의 3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5. 접수 제17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C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가단830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20. 'C는 E, F와 연대하여 D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5%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5.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08. 11. 7.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8. 7. 11.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309506호 양수금 사건에서 C 등을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C는 E,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93,117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2015. 9. 2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12.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6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1. 12. 2.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H은 2009. 7. 10.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와 자녀들인 I, J, 피고가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19. 3. 26.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5. 접수 제1796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3/9)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 9분의 3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9분의 3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5. 접수 제17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임윤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철근 콘크리트조 및 벽돌조경사 슬래브위 시멘트 기와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153.00㎡

2층 153.00㎡

3층 153.00㎡

지하실 153.00㎡

(내역 : 지하실, 1층, 2층, 철근콘크리트조, 3층 벽돌조)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지하실

면 적 : 76.50㎡, 25.5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 3367㎡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3367분의 88.48

